

국별현황자료(Country List) 및 향후 협상대책



김 정 용
(농림수산부 농업협력 통상관)

1. UR농산물협상 추진경위

- '86. 9 :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 각료 선언으로 UR개시
- '88. 12 :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중간평가」 협의
 - 농업등 4개분야에서 미합의로 결제
- '89. 4 : 스위스의 제네바 고위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중간평가 재협의
 - “농업보호수준의 상당한 정도 지속적 감축” 합의
- '89. 5~'89. 11 : 각국의 입장 제출
- '90. 1. 1~6 : 각국의 입장 개진과 토론(협상윤곽의 합의도출에 실패)
- '90. 7. 2 : 드쥬 농산물그룹의장이 합의초안 제시
 - 국별 현황자료(Country List)를 '90. 10. 1 제출
 - 수출국 중심의 입장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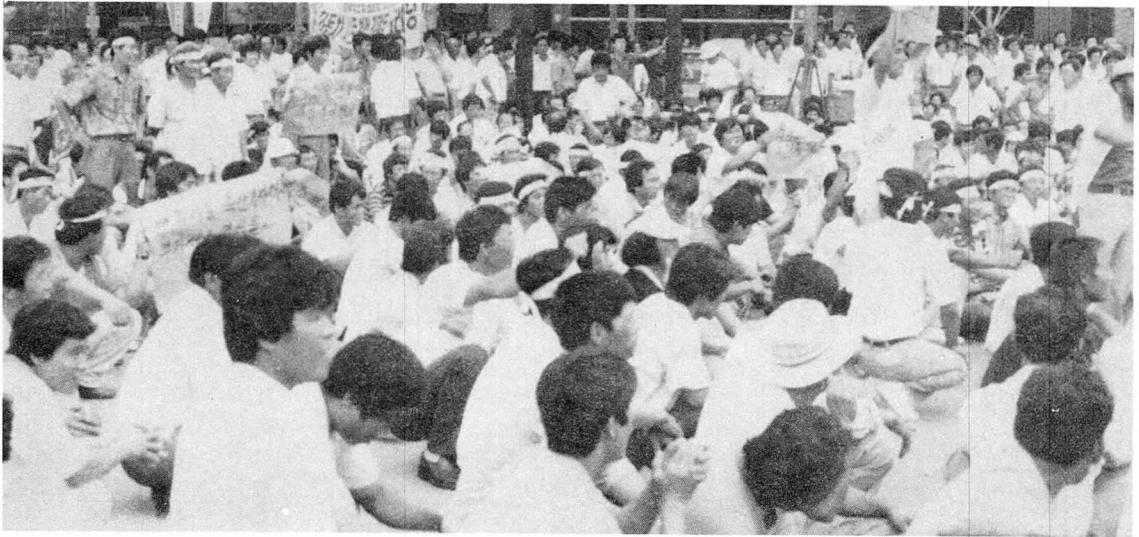
- 수입국, 개도국, EC의 반발
- '90. 7. 23 : 고위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초안채택 시도
 - 초안은 「협상의 기초(Basis)가 아닌 촉진 수단」으로 합의
 - 국별감축계획(Offer List)은 '90. 10. 15까지 제출
- '90. 7~10. 5 : 농산물그룹협상(23차~25차)에서 합의도출 시도

2. 드쥬의장 초안

가. 성격

- 협상의 촉진수단으로만 채택되었으나 향후 협상의 윤곽을 제시
- 국별현황자료(Country List) 제출기한('90. 10. 1)을 명시

나. 내용



○ 시장개방

- 모든 비관세조치를 철폐하여 관세화함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관세상당치: T. E)를 부과토록 하나 금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이행 기간내에 이를 상당수준으로 감축
- 기 자유화된 농산물의 관세는 현행수준에서 GATT에 양허

○ 국내보조

- 농산물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 허용되는 보조정책도 현수준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고 GATT의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됨.

○ 수출보조

- 관세상당치나 국내농업보조 감축수준보다 급속 감축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은 최소한도로 고려

○ 개도국은 협상결과 이행에 있어서 특별대우 부여

3. 국별현황자료(Country List)의 성격과 내용

가. 국별현황자료의 성격

○ 각국의 농업보호와 지지내용에 대한 공식자료

- 각국의 현황자료는 모든 회원국에 공개되며, 타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및 설명(Clarification)에 응할 의무

- 일단 현황자료가 제출되면, 대외 신뢰차원에서 수정이 곤란

○ 향후 농산물그룹(NG5) 협상을 촉진하는 실질적 수단

분야별	주요내용
국내보조	○ 품목별 '88년 기준 보조총액(AMS) ○ 감축대상정책 - 시장가격지지(외국의 가격차×생산량), 직접보조, 생산비지원 ○ 허용대상 정책: 기술연구 및 교육, 유통구조개선등
시장개방	○ 품목별 관세율과 양허여부('86.9기준) ○ 비관세장벽 내용 및 관세상당치(국내의 가격차를 %로 표시) ○ 최근3년('86~'88)간의 연평균 수입량 ○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보조	○ 최근3년('87~'89)간 수출에 지원된 재정지출액

주: 금액은 당해국 현지통화로 표시

나. 우리나라의 국별현황자료 작성내용

(1)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 AMS산출품목(9개) :
 -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 * OECD 16개품목중 국내생산이 없거나 적은 품목은 제외
- 채소류, 과일류는 계산불가능 품목으로 제출
- 허용, 감축대상정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재분류
- 품목별 국내보조 산출액

('88년기준)

품목명	생산액 (A)	보조총액 (B)	가격지지 ¹⁾ (C)	실제정부보조액 (B-C)	비율 (%)	
					B/A	(B-C)/A
쌀	백만원 6,289,067	백만원 5,450,345	백만원 4,757,658	692,687	86.7	11.0
보리	349,888	285,649	268,664	16,985	81.6	4.9
대두	245,453	200,971	197,414	3,557	81.9	1.4
옥수수	43,688	34,030	33,274	756	77.8	1.7
쇠고기	715,000	566,729	537,420	29,309	79.3	4.1
돼지고기	1,048,464	469,236	447,203	22,033	44.8	2.1
닭고기	221,861	98,250	93,685	4,565	44.3	2.1
우유	524,600	418,530	390,461	28,069	79.8	5.4
계란	274,327	67,717	62,348	5,369	24.7	2.0

1) 가격지지 산출방법 : (국내가격 - 국제가격) × 생산량

(2) 시장개방

- 관세율 제출대상 : ('86. 9기준)
 - 전체 농림수산물중 임·수산물 제외 (임·수산물은 천연자원그룹에서 취급)
 - 기양허된 품목은 양허세율, 비양허품목은 '86. 9월 실행 세율 표기
- 관세 상당치(TE) 제출대상 : ('86~88평균)
 - 원칙적으로 '90년도 현재 수입제한품목, '91개방예시품목도 관세상당치 제시
 - '86~'90기간중 수입자유화품목도 관세상당치를 제시, 아국 기여실적으로 반영
 - 국제거래가 없거나 국내생산이 없어 가격

산출이 곤란한 품목은 관세상당치 산출대상에서 제외

(3) 수출보조

- 수출보조는 실적이 없어 작성치 않음.

○ 품목별 관세상당치(TE)

품목	관세상당치 (TE)	국내가격 ('86~88)	국제가격 ('86~88)	수입량 ('86~88)	수입비율 ('86~88)
		원/kg	원/kg	천톤	%
쌀	505	1,552	258	0.4	0.0
맥주	439	713	132	0.0	0.0
보리	276	387	103	1.1	0.0
옥수수	338	357	83	4,575.0	97.0
대두	457	1,069	193	1,071.0	85.0
땅콩	300	2,267	519	4.9	18.9
참깨	1,203	6,335	556	5.8	11.0
대두유	118	952	421	0.0	0.0
설탕(자당)	207	598	195	0.0	0.0
수삼과홍삼	991	401,577	37,440	0.0	0.0
백삼	189	68,840	39,829	0.0	0.0
바나나	779	4,216	479	8.7	44.0
파인애플	251	1,450	416	0.0	0.0
견사	112	41,614	20,757	0.0	0.0
생사	77	39,866	22,544	2.3	53.0
누에고치	64	5,551	3,380	1.2	29.0
쇠고기	168	4,653	1,750	4.7	3.2
돼지고기	26	1,864	1,482	0.0	0.0
닭고기	41	1,489	1,053	0.0	0.0
탈지분유	433	4,300	844	0.5	6.1
전지분유	235	3,875	1,160	0.2	1.9
버터	268	3,585	980	0.1	3.3
치즈	529	7,000	1,100	0.1	5.0
감자	115	310	146	0.0	0.0
양파	113	378	181	0.0	0.0
마늘	170	1,818	697	0.0	0.0
고추	470	4,917	923	0.1	0.0
팔	510	1,573	262	15.8	31.3
고구마	301	348	90	0.0	0.0
오렌지	145	3,575	1,637	0.2	100.0
감	105	715	358	7.6	0.0
포도	93	2,837	1,471	0.0	0.0
사과	108	944	456	0.0	0.0
배	147	881	359	0.0	0.0
복숭아	49	696	470	0.0	0.0
단감	57	1,691	1,097	0.0	0.0
계란	20	769	654	0.0	0.0

4. 국별 농업보호 감축계획(Offer List)

가. 국별감축계획 작성 분야와 내용

분 야	대 상	작 성 내 용
○국내보조	시장가격지지(MPS) 및 국내보조금의 감축	이행시기,이행시간,감축폭 및 감축방법(Formula 또는 R/O)
○시장개방	관세상당치 감축	〃
○시장접근	수입 Quota확대	이행시기 및 기간,최초 Quota량,연도별 증량계획

나. 국별감축계획 작성상의 고려사항

- 그간의 협상에서 견지해온 자국입장의 일관성 유지
 -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유지를 위한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
 - 농업보조조정이 필요한 국내보조정책은 허용대상정책으로 계속 유지
- 아국의 농산물교역 자유화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 고려
 - '89. 4 중간평가회의시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 원칙에 합의
 - '89. 10 BOP/KOREA위원회시 대부분의 존재수입제한품목에 대해 '97년까지 자유화 약속
- 타국 O/L제출내용과 형평성 유지
 -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EC, 스위스, 일본등 수입국 동향 참조

다. Offer List 작성 방침

(1) 보조금

- 감축폭은 품목별 Offer를 지양하고 일괄 표시(κ%)방법 견지
- NTC관련품목은 원칙적으로 감축대상에서 제외
- 개도국 우대 원칙과 구조조정 관련시책의

지속적 보장입장 견지

(2) 시장개방

- NTC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제한품목으로 존치
- 여타 품목은 일정 유예기간후 개방
- 관세 상당치(TE)는 당해 품목의 개방연도부터 적용

(3) 시장접근

- NTC관련품목은 기존 Quota량 수준에서 수용
- 여타 품목은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

라. 예상되는 문제점

- 유예기간중 현행 수입제한과 보조정책유지로 실질적인 개방과 감축은 거의 없게되는 결과
- 주요협상국의 반발과 집중적인 개방확대 요구(Request)가 예상
 - NTC품목에 대한 전면적 예외, 장기간 유예기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마. 자유화 및 보조감축의 예외품목 선정 (NTC : Non-Trade Concerns)

(1) NTC개념의 배경

- 농업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완전자유무역에 맡길 수 없는 특수성
 - 식량안보, 고용유지, 국토 및 환경보전,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 인정
- 한국, 일본,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농업보호 근거로 주장
- 1989. 4 중간평가회의시에 공식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

(2) NTC에 대한 각국의 인식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수출국들은 예외인정

에 반대

- 한국,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들은 GATT의 공식적인 원칙 또는 규범으로 인정요구
- 드쥬 의장초안에 관세화 과정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관계국과의 양자협상에서 합의
- ⇒ NTC품목의 예외인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관철토록 추진

(3) NTC대상품목 선정

- 선정기준
 - 식량안보를 위한 국민필수 식량
 - 국가전체의 고용유지 및 농가소득 기여도가 큰 품목
- 대상품목(정부잠정안) : 9종목
 - 쌀,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닭고기, 참깨, 보리
 - 공청회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바. 국별감축계획(Offer List)제출 절차

- 감축계획 제시는 국내농업정책 조정과 연계
- 농민, 학계, 언론, 정치권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 필요
 - 의견수렴과정에서 협상전략이 사전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대처 필요
-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감축계획 및 정책조정계획 최종안을 확정

〈향후 국별감축계획 제출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0월 중순	○국별 현황자료(Country List)제출
10. 12	○수입개방 보완대책위원회 개최
10. 16	○공청회 개최
10월 하순	○국별 감축계획(Offer List)최종안 확정 및 GATT제출

5. 향후 협상일정과 대책

가. 향후 협상일정

- '90. 10. 9 :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Green Room회의)
 - 향후 협상일정 및 운용방안 결정
- '90. 10월말~11. 20 : Offer List에 대한 양자협상 진행
- '90. 11. 23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타결안 확정
- '90. 12. 3~7 : 브뤼셀 TNC회의를 통해 협상종결

나. 앞으로의 협상대책

(1) Country List 및 Offer List제출

- 관계부처,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조정후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되, 각국의 제출동향을 보아 제출
 - Country List제출 : 10월중순,
 - Offer List제출 : 10월하순
- 양자협상에 대비한 구체적 품목별 협상대안 준비

(2) 향후협상을 위한 총력대응체제 확립

- 농림수산부내 협상특별자문회 설치
- UR비상대책위 설치(위원장 : 농림수산부차관)
 - 협상대책반, 국내대책반, 홍보대책반 운영

(3) 제네바에 협상지원본부 설치

- 양자협상, 최종단계 마무리협상에 대비 상주협상팀 제네바 파견(10월말~11월말)

(4) 이해당사국과의 이해증진 및 공동보조 추진

- 정부고위급인사의 주요협상국 방문 설득(11월중)
- 수입국, 개도국과의 공동대처방안 강구